의안번호	제 495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이양섭 의원 등 7명
발의연월일	2016년 10월 31일

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

(이양섭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95

발의연월일 : 2016년 10 월 31 일
발 의 자 : 이양섭, 이광희, 김영주, 박우양, 박종규, 윤은희, 박한범

1. 제정이유

○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 발굴, 조사연구, 자치역량 강화, 민간교류·협력 및 국가 정책 대응 등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회 및 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협의회 설치·운영 (안 제5,6,7조)
- 기능 : 정책과제 발굴, 대정부 핵심과제 대응, 주민참여 활성화 등
- 구성 : 30명 이내, 공동 위원장(도지사, 민간위원 1명), 임기 2년

나.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설치·운영 (안 제13, 14조)
- 기능 : 정책개발, 조사연구, 자치역량 강화, 민간협력, 국가 정책 대응 등

다. 센터의 운영 위탁 (안 제14조)
-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, 운영 (위탁기간 3년)

라. 센터 운영 위원회 설치 (안 제16조)
- 운영자 구성 원칙, 20명 이내, 임기 3년

마. 센터 운영에 대한 감독 (안 제18조)
-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 실시, 필요시 수시 검사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붙임

다. 입법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 2016 - 49 호

라. 협　　의 : 기획관리실과 협의함.

마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　　호

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충청북도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국토균형발전”이란 광역간의(수도권과 비수도권 포함) 불균형을 해소하고,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충청북도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지방분권”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여 다양성이 존중되는 참여 실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(책무) ①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는 국가가 추진하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도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수립, 시행 등 모든 과정에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.

제5조(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협의회의 설치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운동을 도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민협의체인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협의회(이

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.

1.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추진
2. 대정부 핵심과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및 추진
3.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행방안 마련
4.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

제7조(구성 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도, 관계기관, 학계, 언론계, 법조계, 시민사회계, 경제계 등 각 분야별 자치분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되며,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정 및 의제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원의 위촉 해제)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
2.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 될 때

제10조(협의회 운영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

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협의회는 실질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다른 지역의 협의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, 도지사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2조(경비의 지원) 도지사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의 설치·운영) 도지사는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3조(센터의 기능)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토균형발전, 지방분권,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사업
2. 도민 참여 및 자치역량강화 관련 사업
3. 국토균형발전, 지방분권,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민간교류, 협력 사업
4.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정책 및 현안 대응 사업
5. 그 밖에 국토균형발전, 지방분권, 지방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14조(운영의 위탁)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,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"수탁기관"이라 한다)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.

③ 위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관련 평가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위탁기간 연장 결정 여부는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통보한다.

제15조(센터의 운영) 수탁기관은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

하며,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16조(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제17조(비용의 지원)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운영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(감독) ① 도지사는 센터 운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, 수탁기관의 행위가 위법,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,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,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되, 필요한 경우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고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운영자에게 고지하고 「행정절차법」에서 정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9조(위탁의 취소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기관이 관계법령,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
2. 수탁기관이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그 밖에 공익상 관리·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

제3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 [개정 2014.1.7.]

제7조 (시·도 발전계획의 수립) ① 시·도지사는 해당 시·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·도 발전계획(이하 "시·도 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한다. [개정 2014.1.7]

□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

제3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「지방자치법」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, 지방분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때에는 포괄적·일괄적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 발굴 등 촉진 지원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(안) 제13조(센터의 설치·운영) 및 제17조(운영비 지원 및 정산 등)의 근거로 필요한 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

○ 안 제14조(운영의 위탁)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(이하 “운영자”라 한다.)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안 제17조(운영비 지원 및 정산 등) ①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비 등 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재정수반요인 : 센터 설치·관리·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
(임차료, 인건비, 사무관리비 등)

나. 추계의 전제 : 인력 3명

다. 추 계 결 과 : 17년~21년까지 총 1,220,000천원 정도 소요

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마. 인력운영계획

구 분	1차년도 (2017년)	2차년도 (2018년)	3차년도 (2019년)	4차년도 (2020년)	5차년도 (2021년)
인력운영	3 명	3 명	3 명	3 명	3 명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17년)	2차년도 (2018년)	3차년도 (2019년)	4차년도 (2020년)	5차년도 (2021년)
세 출	1,220,000	540,000	170,000	170,000	170,000	170,000
관리·운영비	850,000	170,000	170,000	170,000	170,000	170,000
설치비(임차료)	370,000	370,000	0	0	0	0

6. 작성자 : 정책기획관 송재구